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235
----------	-------

제출년월일 : 2023. 8. .
제출자 : 안산시장

□ 제안이유

- 기존 조례를 주제별로 총칙 - 도시공원의 설치·관리 - 도시공원의 활성화 - 도시공원의 점·사용허가 - 도시공원 위원회로 분류하여 정비하고 공원 이용 활성화, 공원 내 주차 제한 등을 조례로 규정하여 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비행정청의 공원조성자격 규정 변경(안 제7조)
- 주차요금 징수 규정 신설(안 제9조)
- 주차 제한 등, 주차요금 감면 규정 신설(안 제10조, 제11조)
-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신설(안 제12조)
- 과태료 부과·징수 신설(안 제13조)
- 공원관리수탁자의 의무, 책임의 소재 규정 신설(안 제19조, 제20조)
- 공원 이용 활성화 규정 신설(안 제21조)
- 공원점용허가의 기간, 관리, 점용료 규정을 신설(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 사용허가 제한 규정을 신설(안 제28조)
- 원상복구 조치 규정 추가(안 제36조)
- 위원장 직무 규정 추가(안 제39조)
- 제12조(공원입장료 등), 제23조(수수료 등) 규정 삭제

- 개정조례안 : 【붙임 1】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2】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23. 6. 28. ~ 2023. 7. 18. (21일간)
- 기타 참고사항
 - 현행조례 : 【붙임 3】
 - 방침결정문 : 【붙임 4】

【불임 1】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안산시 도시계획 구역에 속하는 도시공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2. 공원시설: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3. 어린이: 4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와 초등학생을 말한다.
4. 청소년: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고등학생, 대학생을 말한다.
5. 군 인: 「병역법」에 따라 복무 중인 부사관 이하의 군인(직업군인은 제외한다) 및 전환복무자(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를 말한다.
6. 단 체: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7. 공작물: 지상 또는 지하에 인공을 더하여 설비된 모든 시설을 말한다.
8. 시설사용: 공원시설을 그 용도대로 사용하거나 게시 · 공연 · 전람 등을 위하여 공원시설을 활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2장 도시공원의 설치 · 관리

제4조(주제공원의 세분)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제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생태공원: 자연생태계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생태적으로 복원 및 보존하여 자연학습 및 여가 활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2. 가로공원: 가로변에 시민의 휴식과 도심 경관 개선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제5조(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 ① 법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른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단위로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단위 공원 조성의 경우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면적의 일부에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원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공원 조성 면적을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국 · 공유지 제외)
- ③ 공원 및 공원시설은 모든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시설물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방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에서 규정한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공원 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관리시설의 보수 · 개량사업
2. 소공원 · 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
3. 도시공원 안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시설보다 축소하는 경우

제7조(비행정청의 공원조성 자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 하는 자에게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1. 공원조성 능력이 있는 자
2. 공원조성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은 자

제8조(입장의 거부 또는 퇴장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원 내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질환자
2. 만취자
3.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는 자
4. 공원 내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5. 미풍양속을 해치는 자

제9조(주차요금 징수 등) 시장은 공원 내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안산시 주차장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공원 주차장 이용료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주차 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공원 내에 주차를 제한할 수 있다.

1.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동차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자동차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동차
 4. 영업행위를 하기 위하여 공원에 진입하려는 자동차
 5. 숙박을 목적으로 주차장에 진입하려는 자동차 또는 트레일러 등
 6. 보관 등을 목적으로 진입하는 건설장비, 레저용 장비, 트레일러 등
 7.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 제한을 위하여 해당 차량의 주차장 진입 방지를 위한 높이제한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주차요금의 감면) 시장은 공원 내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안산시와 그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에서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11호 및 안산시 고시에 따라 동물놀이터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 법 제49조제2항 제2호의 행위

2. 공원관리 및 공원에서 행사를 위한 허가된 차량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49조제2항제1호의 행위

제13조(과태료 부과·징수) ①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영 제51조제1항 별표 4와 같다. 다만, 제12조에서 허용된 행위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14조(관리인) 시장은 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3장 공원 및 공원시설의 위탁관리

제15조(공원 및 공원시설의 위탁관리) ①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원 등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 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원 등의 특성상 면허 또는 경험 등이 필요한 테니스장 등 운동 시설의 경우에는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6조(관리위탁 등의 기간) ①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원 등을 위탁관리 할 경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그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위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위탁기간 만료 30 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 만료 후 개신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를 따른다. 이 경우 재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17조(공원 등의 위탁료 등) ① 공원 등을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료는 감정가격 또는 원가계산용역 등의 방법으로 결정하며 매점, 식당 등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 등의 위탁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및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6조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② 위탁료는 제16조에 따른 위탁 기간에도 불구하고 매년 새로 결정하며 위탁료의 결정에 관하여는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3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보조) 시장은 수입이 없는 공원 등의 관리를 위탁하였을 경우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공원관리 수탁자의 의무) 공원관리 수탁자는 수탁사무 처리에 법령을 지키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0조(책임의 소재)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제4장 공원 이용의 활성화

제21조(공원 이용 활성화) ① 시장은 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계절별, 공원 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공원 이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원 이용 프로그램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프로그램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원 이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둘 수 있다.

제5장 도시공원의 점 · 사용허가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영 제22조제18호에서 규정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을 말한다.

제23조(점용허가의 기간) ① 시장이 공원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의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고려하고, 점용허가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

② 영 제23조제2호에 따른 별표 1 제10호의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공연·영화상영·영화촬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 공작물의 설치 존속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 집회, 영화상영의 경우 2개월 이내

2. 전시회, 박람회, 공연, 영화촬영의 경우 1년 이내

③ 공원·녹지 점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점용자”라 한다)가 점용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점용기간 만료 30일 전 시장에게 점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점용기간의 연장이 해당 공원 또는 녹지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점용물의 관리) ①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자에게 공사 전·후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 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 목적, 허가기간, 면적과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점용료) 점용료는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6조(사용허가) ① 공원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용 희망일 7일 전까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사용 희망일 3일 전까지 해당 내용을 허가받아야 한다.

② 연습 또는 체력단련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료를 납입하면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공원 사용에 대한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제26조에 따라 신청에 경합이 있는 때에는 접수순위를 우선으로 허가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또는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 공원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동시에 경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경기(행사)
2. 안산시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가 주관하는 경기(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러 명이 참석하는 경기(행사)
5. 그 밖에 문화,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제28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제27조의 공원 사용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지역주민의 정서를 해치거나 시의 시책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시설 또는 기반 시설물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안전관리 등 공중질서가 저해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9조(공원 및 공원시설의 사용료) 공원 및 공원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이 하고, 도시공원 내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30조(공원요금의 징수방법 등) ① 공원시설의 사용료는 시설 사용신청 시에 징수한다.

② 제17조에 따른 공원시설 관리위탁료의 징수는 그 성질에 따라 연액, 반기액, 월액 등으로 상호 협의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전액
2. 시·도 대표로 참가하기 위해 강화훈련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훈련: 전액
3.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최(주관)하는 대회: 50퍼센트
4.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26조에 해당하는 노인, 3세 이하인 아동,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또는 행사: 50퍼센트
5. 안산시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에서 체육진흥을 위하여 주최(주관)하는 대회: 30퍼센트

6. 민속제나 고유민속의 보급발전을 위한 행사: 30퍼센트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또는 행사: 30퍼센트

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사용료의 반환) ① 도시공원 내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은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1조를 준용한다.

② 사용료 반환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신청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전액 반환한다.

제33조(전대 등의 제한) 이 조례에 따라 부여되는 모든 권리는 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34조(허가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위반할 때

2. 사용허가의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3. 사용료를 2개월간 체납하였을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공원시설의 안전관리상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5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① 공원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경기 또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사용자는 시설과 비품 등을 사용하면서 시설물을 손괴(파손, 오손, 분실 등)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경기(행사) 시 발생한 폐기물 등을 경기(행사) 종료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제36조(원상복구) 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점용기간이 끝나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원상회복 의무자에게 징수한다.

제6장 도시공원 위원회

제3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공원녹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2.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
3. 공원조성계획 및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4. 「안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심의

제3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공원녹지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과 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3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에 규정에 따라 행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소관 실 · 과		공원과
입 안 자	실 · 과장 직위 · 성명	공원과장 서 병 구
	담당 · 팀장 직위 · 성명	공원행정팀장 조 현
	담당자 성명 · 전화	이 진 화 (행정 2415)

[별표 1]

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료(제29조 관련)

공원별	종 별	사용기준	금 액	비 고
공 통	사진촬영	1인 1년당	100,000	상시 영리행위에 한함
	영화촬영	주간 1회	50,000	
		야간 1회	100,000	
	녹 화	1시간	10,000	영리목적 촬영에 한함.
		초과시간당	5,000	
	유희시설, 체육시설, 기타시설	- 위탁관리자(법 제4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는 자를 제외한다.)가 공원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시행 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시장은 위탁관리자가 신고한 사용료가 부당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백운 공원	썰매장	개인	어 른 7,000원	
			청소년·군인 5,000원	
			어린이 4,000원	
		단체 (평일에 한함)	어 른 3,500원	
			청소년·군인 2,500원	
		비 고	어린이 2,000원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썰매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 50퍼센트	
			2.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50퍼센트	
			3.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50퍼센트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동반 1인 포함) : 50퍼센트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50퍼센트	
			6. 단체할인(평일 단체로 사전 예약한 500명까지만 적용가능) : 50퍼센트	
			7. 3세 이하의 영유아 및 65세 이상인 사람 : 100퍼센트	
			8.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 100퍼센트	
			9. 자녀를 동반한 보호자로 시설사용을 하지 않는 자(단, 동절기 1인에 한함) : 50퍼센트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9-235
------------	-------

제안년월일 : 2023년 9월 5일
제 안 자 : 도시환경위원장

수정이유

- 도시공원 내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한 주차요금과
감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수정함.

주요골자

- 주차요금의 징수 기준에 관하여 별표 2 신설을 통해 본 조례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징수대상 공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안 제9조
및 별표 2)
- 주차요금의 감면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산시 주차장 조례의 감면
기준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정하여 수정.(안 제11조)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안산시 주차장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별표 2의 기준”으로, “있으며, 공원 주차장 이용료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를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대상 공원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안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대하여는 「안산시와 그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을 “대하여 「안산시 주차장 조례」 별표 2 제7호를 준용하여”로, “감면”을 “감경”으로 한다.

안 제1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공원주차장 주차요금표(제9조 관련)

구분	1회 주차요금(1구획당)		1일주차권	월간
	최소 60분까지	60분초과 후 30분마다		
소형	무료	300	2,000	20,000
대형	500	500	3,000	30,000

수정안 조문 대비표

□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한 수정안

전부개정안	수정안
<p>제9조(주차요금 징수 등) 시장은 공원 내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안산시 주차장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공원 주차장 이용료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p> <p><u><신설></u></p>	<p>제9조(주차요금 징수 등) ① ----- ----- ----- <u>별표 2의 기준</u> ----- -----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징수대상 공원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p>
<p>제11조(주차요금의 감면) 시장은 공원 내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안산시와 그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p>	<p>제11조(주차요금의 감면) ----- ----- --- - 대하여 「안산시 주차장 조례」 별표 2 제7호를 준용하여 ----- ----- <u>감경</u> ----- -----.</p>
<p>제12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① (생략)</p>	<p>제12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현행 제1항과 같음)</p>

전부개정안	수 정 안																	
<신설>	<p style="color: blue;"><별표 2></p> <p>[별표 2] 공원주차장 주차요금표(제9조 관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1회 주차요금(1구획당)</th> <th rowspan="2">1일주차권</th> <th rowspan="2">월간</th> </tr> <tr> <th>최소 60분까지</th> <th>60분초과 후 30분마다</th> </tr> </thead> <tbody> <tr> <td>소형</td> <td>무료</td> <td>300</td> <td>2,000</td> <td>20,000</td> </tr> <tr> <td>대형</td> <td>500</td> <td>500</td> <td>3,000</td> <td>30,000</td> </tr> </tbody> </table>	구분	1회 주차요금(1구획당)		1일주차권	월간	최소 60분까지	60분초과 후 30분마다	소형	무료	300	2,000	20,000	대형	500	500	3,000	30,000
구분	1회 주차요금(1구획당)		1일주차권	월간														
	최소 60분까지	60분초과 후 30분마다																
소형	무료	300	2,000	20,000														
대형	500	500	3,000	30,000														